

기 관 명

우

주 소

/전화()○○○○ /전송()○○○○

○○과

과장 ○○○

/서기관, 사무관 또는 주사 ○○○

문서번호

시행일

/담당 ○○○

수 신

발 신

직인

제 목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

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일련 번호	납세의무자				⑥ 귀속 연도	환급결정		⑩ 구분	⑱ 발행연월	⑲ 발행번호	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																	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			환급 신고 계좌	
	① 관 리 번호	② 성명 (상호)	③ 주민 등록 번호	⑤ 현주소 (신고당시 주소)		⑧ 결정일	⑨ 사유				⑳ 과세 표준	㉑ 과세 표준 안분	㉒ 연 평균 과세 표준	㉓ 환산 과세 표준	㉔ 환산 산출 세액	㉕ 연 평균 산출 세액	㉖ 산출 세액	㉗ 세액 공제	㉘ 가산세 (명세)	㉙ 이연 퇴직 소득세 납부	㉚ 총결정 세액	㉛ 기납부 세액	㉜ 납부 (환급) 할 총세액	환급세액			㉞ 세액	㉟ 기납부 세액	㊱ 환급할 세액	㊲ 은행 코드	㊳ 계좌 번호	
			④ 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㉝ 본세	㉞ 신고 불성실 가산세	㉟ 납부지 연가산 세						
총 계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1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2							당초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경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차이																									

작성 방법

- ☐ ① 관리번호: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인적사항(납세의무자)란
- ③ 주민등록번호: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④ 연락처: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⑤ 현주소(신고 당시 주소):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☐ ⑥ 귀속연도: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.
- ☐ ⑦ 세무서(담당자):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.
- ☐ ⑧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, ⑨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.
- ☐ ⑩ 구분: "당초"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, "경정"은 결정,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☐ ⑱ 발행연월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.
- ⑲ 발행번호: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,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☐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
- ⑳ 과세표준 ~ ㉔ 산출세액: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상 과세표준 ~ 산출세액을 '2012.12.31 이전', '2013.1.1 이후', '계'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- ㉔ 가산세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가산세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하여 적고,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
- ㉖ 총결정세액: "㉔ 산출세액 - ㉗ 세액공제 + ㉔ 가산세 + ㉕ 이연퇴직소득세 납부"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㉓ 본세: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.
- ☐ 환급금 신고계좌란
- ㉙ 은행코드: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.
- ㉚ 계좌번호: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